

증권선물위원회

의결 제2022-94호

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제재대상	내용(회사명, 성명 등)
기 관	아름드리자산운용(주)

2. 조치내용

- (금감원 원안) 투자중개업자로부터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채산을 운용하는 행위, 대주주 변경 사항 공시의무 위반에 대하여 기관 과태료 총 262백만원 부과
- (수정심의) 과태료 총 242백만원* 부과

* 투자중개업자로부터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채산을 운용하는 행위 과태료 250백만원을 230백만원으로 수정 심의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이 262백만원에서 242백만원으로 감경됨

3. 조치이유

가. 지적사항

- 1) 투자중개업자로부터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채산을 운용하는 행위

가) 금감원 원안

- 「자본시장법」 제85조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 등에 의하면
 -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명령·지시·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채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

□ 이룸드리자산운용(이하 “회사”)는 20××.×.××.~20××.×.××. 기간중 ★★
◆◆◆◆◆대출채권에 투자하는 ‘아름드리▲▲▲▲▲전문투자형사모투자
신탁제◆호’ 및 ☆☆☆☆ ◎◎대출채권에 투자하는 ‘아름드리▽▽▽▽
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○호’ 등 ×개의 투자신탁을 각각 설정하고
운용하면서

○ 다음과 같이 5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투자중개업자인
△△은행으로부터 펀드의 설정 및 펀드재산의 운용에 관한 요청
을 받고, 요청받은 대로 5개 펀드 총 ×××억원의 집합투자재산을 운
용한 사실이 있음

(1) ▲▲▲▲▲ 펀드 관련

○ 회사는 20××.×.××., ×.××. ★★ ◆◆◆◆◆대출채권에 투자하는
‘아름드리▲▲▲▲▲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◆호’(설정액 ××.×억원),
‘아름드리▲▲◆◆◆◆◆○○○○○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□호’(설정액
×××.×억원) 투자신탁(이하 “▲▲▲▲▲ 펀드”)을 각각 설정하고
운용하는 과정에서

- ▽▽▽▽본부 ○○○ 부사장은 20××.×.×., ×.××. △△은행 ★★★★★부
▲▲▲ 차장으로부터 △△은행이 주도한 ★★ 부동산 대출채권에
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펀드 설정과 동 펀드재산을 해외 SPV가
발행한 선순위 대출채권에 운용할 것을 요청받고,

××.×.××.,×.×.경 요청받은 내용대로 상품설명서를 작성하여
△△은행에 송부하고 20××.×.××., ×.××. ▲▲▲▲▲ 제◆호 및
제□호 펀드를 각각 설정한 후

- 20××.×.××., ×.××. 회사는 설정된 ▲▲▲▲▲ 제◆호 및 제□호 펀드의
집합투자재산(×××.×억원)을 당초 △△은행이 펀드설정시 요청한
재산운용 내용대로 해외 SPV가 발행한 선순위 대출채권을 취득
하는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였음

(2) ☆☆☆☆☆☆☆☆☆채권 펀드 관련

- 회사는 20××.×.××., ×.××. 및 ×.×. ☆☆☆☆ ◎◎매출채권에 투자하는 ‘아름드리○○○○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□호(설정액 ×××.×억원), 제◆호(설정액 ××.×억원), 제▲▲호(××.×억원) 3개의 투자신탁(이하 “☆☆☆☆☆☆☆☆채권 펀드”)를 각각 설정하고 운용하는 과정에서
 - ▽▽▽▽본부 ○○○ 부사장은 20××.×.××., ×.×. 및 ×.××. △△은행 ▲▲▲▲부 ○○○ 차장으로부터 각각 △△은행이 주도한 ☆☆☆☆ ☆☆☆☆ 매출채권에 대한 펀드 설정과 동 펀드 재산 운용과 관련한 ★★★★★(주)와의 총수익스왑(TRS) 계약 체결 요청을 받고,
 - 20××.×.××., ×.×. 및 ×.×.경 요청받은 내용대로 상품제안서를 작성하여 △△은행에 송부한 후 20××.×.××., ×.××. 및 ×.×. ☆☆☆☆☆☆☆☆☆채권 펀드 제□호, 제◆호 및 제▲▲호를 각각 설정하였으며
 - 20×.×.××., ×.××. 및 ×.×. 회사는 ☆☆☆☆☆☆☆☆☆채권 펀드 제□호, 제◆호 및 제▲▲호의 집합투자재산 전액(247.4억원)을 당초 △△은행이 펀드 설정시 요청한 재산운용 내용대로 ★★★★★(주)와의 TRS계약을 체결하고, 동 계약의 증거금 명목으로 펀드 설정액 전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였음
 - ▲▲▲▲▲▲ 펀드 2건 및 ☆☆☆☆☆☆☆☆☆채권 펀드 3건 총 5건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를 “상”으로 판단

나) 수정심의 내용

- ‘▲▲▲▲▲▲ 펀드’ 2개의 위반동기를 ‘상’에서 ‘중’으로 감경

- (사유) 자체검토 노력을 일정 부분 한 것으로 인정가능(① 대출 채권 발행주체인 해외 SPV를 사후적으로 변경, ② 하나은행이 송부해 준 제안서와 다르게 후순위 채권 매수 주체를 변경 등)

2) 대주주 변경 사항 공시의무 위반

□ 「자본시장법」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등에 의하면

- 집합투자업자는 최대주주가 변경된 때에는 그 다음날까지 금융위원회 (금융감독원)에 보고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하나,
 - 회사는 20××.×.××. 최대주주가 기존 ○○○ 및 그와 특수관계인 ×인 (지분율 ××.×%)에서 ‘(주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)’(지분율 ×××%)으로 변경되었으나, 이에 대한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검사종료일 (‘××.×.××.)까지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

나. 근거법규

-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33조(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) 제3항, 제85조(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) 제8호, 제449조(과태료) 제1항 제15호·제29호
-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6조(업무보고서 제출 기한 등) 제2항제2호, 제87조(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) 제4항 제6호, 제390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, [별표22] 다.터.
- 「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」 제20조(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) 제1항, [별표3]